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4-416호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 예고

2024. 9. 6.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4-416호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3-58호, 2023.9.18.)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원유 함량이 높은 어린이 기호식품의 포화지방 기준을 완화하여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판매를 권장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원유를 95% 이상 사용한 가공유류에 대해서는 포화지방 기준 완화(안 [별표] 제2호)

○ 원유에서 유래하는 포화지방 함량을 고려하여 원유를 95% 이상

사용한 가공유류에 대해서는 포화지방 기준을 1회 섭취참고량당 5g 이하로 개선함

3. 의견 제출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기준」 일부 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9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 전화: 043-719-2263, 팩스: 043-719-225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4-000호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3-58호, 2023.9.18.)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24년 9월 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2호가목1)나) 중 “유산균음료, 가공유류”를 “유산균음료”로 하고, 같은 목 1)에 다)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가공유류

(1)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다만, 총 내용량이 1회 섭취참고량보다 적은 식품의 경우 총 내용량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가) 열량 : 1회 섭취참고량당 250kcal 이하

(나) 포화지방 : 1회 섭취참고량당 4g 이하(단, 원유 95% 이상 함유한 경우 1회 섭취참고량당 5g 이하)

- (다) 당류 : 1회 섭취참고량당 17g 이하
(2) 가, 1), 나), (2) 기준을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 이전에 품질인증 신청이 접수되어 심사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도 적용할 수 있다.

제3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품질인증 받은 제품은 해당 제품의 인증 유효기간까지 종전 기준에 따라 적용할 수 있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별표]</p> <p>2. 영양에 관한 기준 (생략)</p> <p>가. 가공식품</p> <p>1) 간식용 어린이 기호식품 가) (생략)</p> <p>나) 과자(한과류는 제외한다), 캔디류, ----- -----<u>유</u> <u>산균음료, 가공유류, 발효유류(발효</u> <u>버터유 및 발효분말은 제외한다),</u> <u>어육소시지</u> (1) (생략) (2) (생략)</p> <p>다) <u>신설</u></p> <p>2) (생략) 가) (생략) 나) (생략)</p>	<p>[별표]</p> <p>2. 영양에 관한 기준 (현행과 같음)</p> <p>가. 가공식품</p> <p>1) 간식용 어린이 기호식품 가) (현행과 같음)</p> <p>나) 과자(한과류는 제외한다), 캔디류, ----- -----<u>유</u> <u>산균음료, 발효유류(발효버터유 및 발</u> <u>효분말은 제외한다), 어육소시지</u>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p> <p>다) <u>가공유류</u> (1) <u>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총</u> <u>내용량이 1회 섭취참고량보다 적은 식</u> <u>품의 경우 총 내용량을 기준으로 적용</u> <u>한다.)</u> (가) <u>열량: 1회 섭취참고량당 250kcal</u> <u>이하</u> (나) <u>포화지방: 1회 섭취참고량당 4g</u> <u>이하(단, 원유 95% 이상 함유한</u> <u>경우 1회 섭취참고량당 5g 이하)</u> (다) <u>당류: 1회 섭취참고량당 17g 이하</u> (2) <u>가, 1), 나), (2) 기준을 적용한다.</u></p> <p>2) (현행과 같음) 가) (현행과 같음) 나) (현행과 같음)</p>